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4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8.(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4. 6.(금)	담당부서	활용촉진과
담당과장	박형민 과장(044-203-4150)	담 당 자	김석 사무관(044-203-4156)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훨씬 간편해진다

- 영세·중소기업용 시스템 신규 개발·보급 -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전자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중인 **자유무역협정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fta.utradehub.or.kr)기능을 **대폭 개선**해 오는 4월 9일부터 **신규 시스템**을 본격 보급·**운영**한다.

【FTA KOREA - 원산지관리시스템】

○ (개요) 업체가 입력하는 원산지 정보를 사용하여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에 맞게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여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를 발급하는 웹 서비스**
* '11.6월 서비스 개시, 중견·중소·영세기업이 무상 이용

○ (운영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운영현황, 3월말) 가입 기업 14,353개사 / 원산지 판정 등 서류 발급 119,479건

□ 이번에 새로 개편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사용상 불편함을 크게 **개선**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① **(입력 데이터 항목)** 현행 원산지 판정 입력 데이터 항목 107개에서 **필수 5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 품목코드, 제품단가, 제품코드, 원산지결정기준 등

② **(판정 단계*)** 현행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 절차 9단계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

* (9단계) 품목검색→구매원장→판정진행→요청→판정전입력→계속→판정완료→서류 작성→발급
(3단계) 품목검색 → 서류 작성 및 원산지판정 → 발급

③ **(데이터 수정)** 서비스 화면에서 기초 데이터를 **한번에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

주요 개선 사항	기존 FTA KOREA	신규 FTA KOREA
원산지 정보 입력	107개 항목	51개 항목
판정 단계	9단계	3단계
데이터 수정 방식	항목별 개별 수정	서비스 화면에서 일괄 수정

□ 산업부는 개편한 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산 실습 교육 등 **사용자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자유무역협정**센터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기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온라인 교육 포함)을 늘리고, '시스템 활용 가이드'와 현장 '실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이번에 개편된 신규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빙자료 자동보관을 통한 **사후검증 대응** 업무 등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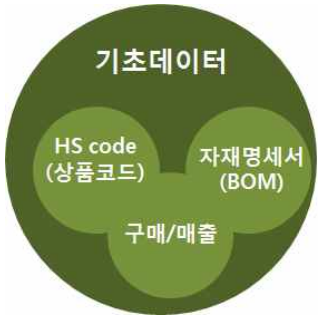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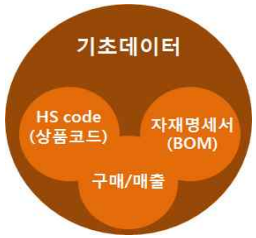
try of Trade,
try and Energy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0,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김석 사무관(☎ 044-203-41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 홍보담당관 / 2018-04-09 10:58:20

참고 FTA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주요 개선 사항

내용	기존 FTA KOREA	신규 FTA KOREA
1 기초 데이터	 107항목	 51항목
2 판정 단계	①품목검색 → ····· → ⑨발급 9단계	①품목검색 → 판정 → ③발급 3단계
3 구성 메뉴	상위 6 하위 39 45개	상위 5 하위 12 17개
4 주 이용고객	중견 기업 예) 매출 50억원, 품목 20개 이상	중소 · 영세 기업 예) 매출 20억원, 품목 10개 이하

* 주1) 시스템 사용 기업규모를 고려한 편의상 구분(중소기업기본법의 기업 구분 아님)
주2) 기업 여건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 FTA KOREA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입력 데이터는 자동 이관)